

#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규정

2차 개정 2023. 03.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조(편제) 및 제31조의9(경험학습 학점인정)에 의거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미래라이프대학의 성인학습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6., 2023. 03. 06)

**제2조(수업)**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개설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수업은 주중 주·야간 또는 주말(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전공과목 중 일부는 e-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e-러닝,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3. 06.)

⑤ 상위학년의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의 승인하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6.)

⑥ 학내에서 개설된 e-러닝 강의는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 성적은 해당학기 평균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 03. 06.)

**제3조(출석)** ① 대면강의와 동시에 실시간 화상강의로 송출한 콘텐츠 또는 이를 녹화한 콘텐츠를 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6.)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6.)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 해당기간
2.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3.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직장 내 위급상황인 경우 : 1일(학기당 1회 한정)
4. 그 외 공결은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2(공결처리)에 의거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5.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이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3. 06.)

[제목개정 2023. 03. 06.]

**제4조(휴학)** 학칙 제23조를 따르되,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미래라이프대학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03. 06.)

**제5조(학기구분)**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 2학기로 나눈다.

②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교육상 필요에 따라 1년 2학기제 +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험학습 인정제)** ① 경험학습 인정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03. 06.)

② 본교 입학 이전 국내·외 **타 학교 · 연구기관 · 산업체에서** 학습 · 연구 · 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16., 2023. 03. 06.)

③ 경험학습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03. 06.)

④ **경험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03. 06.)

**제7조(졸업요건)** 학칙 제 35조에 의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8학기 이상 등록한자, 다만, 조기 졸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23. 03. 06.)

2. 130학점 이상 취득자

3. **삭제** (2023. 03. 06.)

4. **삭제** (2023. 03. 06.)

**제8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국가 지원 및 지자체를 통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중복지원 인정범위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3. 03. 06.)

**제9조(K-MOOC 강좌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본교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장이 승인하여 이수한 K-MOOC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K-MOOC 강좌의 수강신청 및 교과구분,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MOOC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수강신청하며, 교학지원팀에서는 본교 장비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수강신청(학점인정) 명단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K-MOOC 신청학점은 본교 정규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6.)

2. 이수한 교과목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학기당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

가. 학습인정 시간이 650분(13주×50분) 이상 **1,300분** 미만인 경우 : 1학점 (개정 2023. 03. 06.)

나. 학습인정 시간이 1,300분 이상 **1,950분** 미만인 경우 : 2학점 (개정 2023. 03. 06.)

다. 학습인정 시간이 1,950분 이상인 경우 : 3학점

5.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에 한한다.

6. K-MOOC 강좌의 학점은 P(Pass)로 평가하고, 신청한 학점은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 정부 출연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중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과정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09. 16.]

**부 칙** (기획예산팀-275, 2021. 04. 29.)

이 규정은 2021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5301, 2022. 0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동 규정 개정 시행 전 2022학년도 2학기에 K-MOOC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기획예산팀-554, 2023. 03. 06.)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